

2026년 급여이용 정보현황

1. 본 요양원 이용 시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.
2. 급여이용금액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<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>

분 류		장기요양 1등급		장기요양2등급		장기요양3,4,5등급	
1일 시설급여수가 총액		93,070원		86,340원		81,540원	
본인 부담 비용	일반대상자	30일	558,420	30일	518,040	30일	489,240
	(20%)	31일	577,030	31일	535,300	31일	505,540
	감경/의료급여	30일	335,050	30일	310,820	30일	293,540
	(12%)	31일	346,220	31일	321,180	31일	303,320
	감경/의료급여	30일	216,900	30일	207,210	30일	195,690
	(8%)	31일	224,130	31일	214,120	31일	202,210
	기초생활수급자	무료		무료		무료	
비급여항목 (식재료비,이미 용비, 계약의사 진료비)		식재료비 {(1식 4,500원 x 3식)+ 간식 1,000원} x 30일 = 435,000원 {(1식 4,50원 x 3식)+ 간식 1,000원} x 31일 = 449,500원 계약의사 초진비용 18,840원 (일반 3,760 / 감경40% 2,260 / 감경60% 1,500) 재진비용 13,370원 (일반 2,670 / 감경40% 1,600 / 감경60% 1,060)					
입소 비 총액	일반대상자	923,700원(30일)		884,400원(30일)		856,200원(30일)	
		954,490원(31일)		913,880원(31일)		884,740원(31일)	
	감경 40%	706,500원(30일)		682,800원(30일)		646,500원(30일)	
		730,050원(31일)		705,560원(31일)		668,050원(31일)	
	감경 60%	597,900원(30일)		582,300원(30일)		570,900원(30일)	
		617,830원(31일)		601,710원(31일)		589,930원(31일)	
별도부담항목		개인별 병원 진료비 및 약값, 기호식품					

<노인요양시설 급여수가 상세내용>

1.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.
2. 입소시설 1인당 수가는 간병,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, 요양관리, 기능훈련, 기타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.
3. 입·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, 당일 1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%를 산정한다.
4.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요양 등급별 수가의 50%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.
5. 외박수가는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(기준시간은 밤12시)에 산정하며, 이 경우 외박 시작과 종료일시, 외박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<별도부담항목>

1.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 단, 경관영양티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.
2. 이·미용비 : 무료
3. 기타
 - 1) 원거리 외출 및 병원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수단 이용 비용
 - 2)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
 - 3)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 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비용